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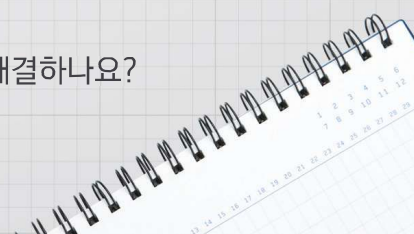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21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01 근로와 세금
-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 03 이럴 땐 공제 증명서류 챙길 필요가 없어요!
- 0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개요
- 05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 07 연말정산 세액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08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요건
- 09 주요 소득공제와 세액감면·공제가 어떤 것이 있나요?
- 10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11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12 연말정산 시 절세 Tip은?
- 13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할 사항은?
- 14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34,240원 납부)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34,240원 환급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하여 표입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기재하여 회사에 신청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 발생 사유

-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 연말정산

-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전(종)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 · 세액 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부속 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중)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0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어디서 수집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22.1.15.부터 서비스 가능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쉽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 등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인터넷을 이용한 첨부서류 발급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이하

▶ 연말정산 관련 용어정리

용 어	설 명																											
총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 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세율이 6%인 경우 : 9만원(150만원×6%)의 세액감소 효과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세 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h>산출세액 계산</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d>과세표준 × 6%</td> </tr> <tr> <td>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td> <td>15%</td> <td>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td> </tr> <tr> <td>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td> <td>24%</td> <td>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td> </tr> <tr> <td>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td> <td>35%</td> <td>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td> <td>38%</td> <td>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td> </tr> <tr> <td>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td> <td>42%</td> <td>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td> </tr> <tr> <td>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td> <td>42%</td> <td>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d>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9,460만원+(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5억 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10억 원 초과금액 × 45%)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 72만원 + (2,800만원×15%) = 4,920,000원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음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 15% = 450,000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감면 개요

-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관련 세법 개정 연혁

개정일	감면 내용	대상자	적용시기 및 적용례
'11.12.31. (신설)	3년간 100%	청년(15~29세)	'12.1.1.~'13.12.31. 취업자에 대해 적용
'14. 1. 1.	3년간 50%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14.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5.12.15.	3년간 70% (한도 150만원)	-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6.12.20.	-	경력단절여성 추가	'17.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18. 5.29.	5년간 90%	청년(15~34세)	'18.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19. 1. 1.	-	장애인범위 확대	'19.2.12.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20. 1. 1.	대상업종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감면대상자

구 분	감면기간	요 건
청년	5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에는 15세~29세 이하) *근로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고령자	3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 단절 여성	3년	①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대상인 경우는 제외

감면대상 중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구분	업종
감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중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감면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을 적용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12~'13년	10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4~'15년	50%(한도없음)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6~'17년	70%(150만원한도) 단, '18년 이후 90%(150만원한도)
	'18~'21년	90%(150만원한도)
60세이상자 장애인	'14~'15년	50%(한도없음)
	'16~'21년	70%(150만원한도)
경력 단절 여성	'17~'21년	70%(150만원한도)

감면신청방법

① (근로자 → 중소기업)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가능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

예시

'21.5.1일 취업한 경우

(근로자 → 회사) '21.6.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 → 관할세무서) '21.7.10일까지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손쉽게 증명서류를 수집하는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
- » 이용방법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자 할 때 ⇒ 연말정산 미리보기

- ▶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
-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어디서나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는 방법 ⇒ 모바일 연말정산

- ▶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방법과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절세주머니」와 「대화형 자기검증」을 이용
-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싶은 경우 「간편계산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
- ▶ 과거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정보가 궁금하다면 「3개년 신고내역 조회」를 이용
- ▶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신청하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이용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

연말정산 결과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할 때 ⇒ 예상세액 계산하기

- ▶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 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가 절세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
- ▶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연말정산 의문점 해소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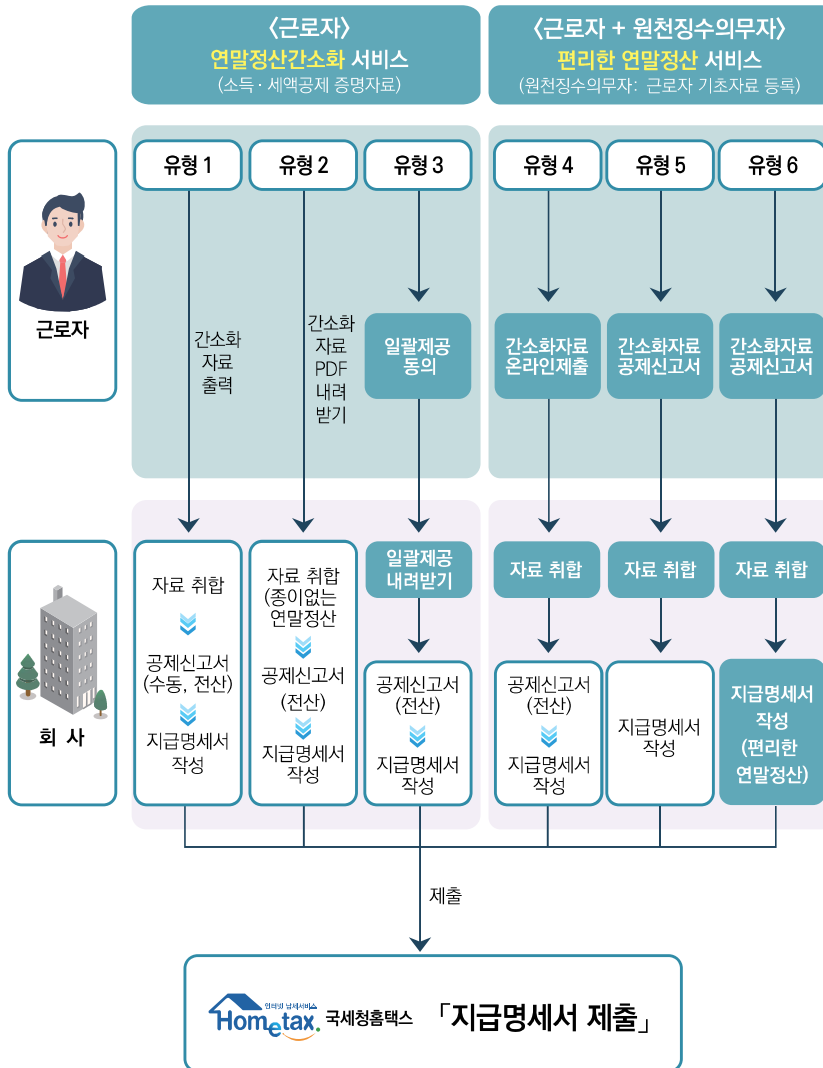
- ▶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해설 제공
- ▶ (Q&A 모음집)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정보 제공
- ▶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을 Y/N으로 대답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 ▶ (계산사례) 계산 방식이 복잡하거나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 설명하고 항목별 다양한 계산 사례 제공

06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 방법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1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유형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 없는 연말정산")
유형3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일괄로 제공받는 회사
유형4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5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6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유형 4·5·6은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이용 가능





총급여

총급여

연봉(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1명당 연 150만원 공제)

근로소득금액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x)

기본세율
(6%~45%)

산출세액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구 분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	X		
	직계존속	60세 이상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1.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X	2001.01.0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	X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1.12.31. 이전 2001.01.0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X	○	○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1.12.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	○	-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X	X	○	
	교육비	X	○	○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	X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p>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p> <table border="1"> <tr> <td>부양가족</td> <td>직계존속</td> <td>직계비속</td> <td>형제자매</td> <td>위탁아동</td> <td>수급자</td> </tr>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60세 이상 20세 이하</td> <td>6개월 이상 양육</td> <td>없음</td> </tr> </table> <p>*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p>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table border="1"> <tr> <td>공제대상</td> <td>경로우대 (70세 이상)</td> <td>장애인</td> <td>부녀자 (부양/기혼)</td> <td>한부모</td> </tr>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able> <p>*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p>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 임차 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p>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p>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p>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p> <table border="1"> <tr> <th>차입시기</th> <th>공제한도</th> </tr> <tr> <td>'15.1.1. 이후</td> <td>·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td> </tr> <tr> <td>'12.1.1.이후</td> <td>·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td> </tr> <tr> <td>'11.12.31. 이전</td> <td>·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td> </tr> </table>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12.1.1.이후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12.1.1.이후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 (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 한도 내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p>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p>
	주택마련 저축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 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공제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는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충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 330만원, 충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 ~ 1.2억원 :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충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결제수단 및 사용처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td> <td>30%</td> </tr> <tr> <td>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충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td> <td>30%</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td> <td>40%</td> </tr> </tbody> </table>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충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충급여 7천만 원 이하지만 해당)	30%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40%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충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조특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액감면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원	감면 대상자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단절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3~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150만원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150만원			
	2014.1.1.~20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150만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세액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충급여액 기준 50·66·74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충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7천만원 이하(66만원)·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자녀	기본 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세액공제	연금 계좌		연 18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비비	① 본인 등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전액	<table border="1"> <tr> <td></td> <td>② < 총급여액 3%</td> <td>② ≥ 총급여액 3%</td> </tr> <tr> <td>공제대상금액</td> <td>① - (총급여액 3% - ②)</td> <td>① + (② - 총급여액 3%)</td> </tr> </table> <p>※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p>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초·중·고생	1명당 135만원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 유학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한도내 전액	근로소득금액 10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 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원 (9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중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2%							

- ◇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다음연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페이지 하단의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

구 분			㉞ 소득세	㉟ 지방소득세	㊱ 농어촌 특별세
㉚ 결정세액*1			200,000	20,000	
Ⅲ 세액명세	기납부세액	㉛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㉜ 주(현)근무지*2		234,240	23,420	
	㉝ 납부특례세액				
㉞ 차감징수세액(㉚ - ㉛ - ㉜ - ㉝)			-34,240	-3,420	

*1 ㉚ 결정세액 : 연말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

*2 ㉜ 주(현)근무지 : 해당 근무지에서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기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㉞ 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함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나요?

-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종료 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 후 지급합니다.

과거 연말정산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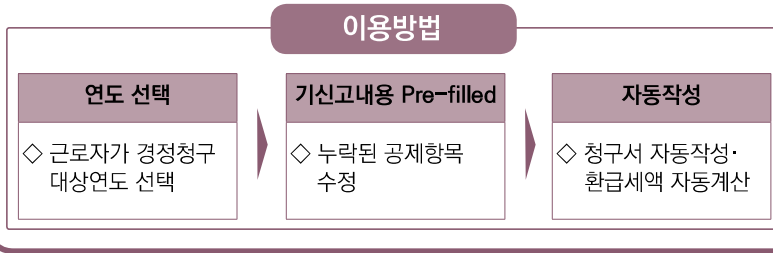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조회가 가능하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사항은 2022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 ▶ **지금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 지금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 근로자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까지 자동 계산·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 ▶ **또한,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 단계**
과다공제를 받은 항목을 수정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후 단계**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 **근로자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을 부담하게 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를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1.12.31. 현재 주민등록등본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공제가 안됩니다.
- 취득 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가 안됩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하여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 가능)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안됩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공제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대상입니다.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손택스앱] 1.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3.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4. 간소화 자료제공 등의 신청 5. 간소화 자료조회 6. 대화형 자기검증 7.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8.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9.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0.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 과거 5년간 조회 (’21년 귀속분은 ’22년 5월부터 조회 가능)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징수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자주묻는 상담 사례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전화	○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1-1번)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지급명세서 상담	(내선 5-1번) 홈택스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내선 5-2번) 연말정산 세법 상담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방문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